

학생봉사활동 사전교육자료(학생용)

1. 봉사활동 시간에 관한 규정

- 가. 결석이 없는 경우 학교교육과정상(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내)의 시간(10시간)이 채워집니다. 그 외에 개인 봉사활동을 8시간 이상을 채워야 고입 내신성적(연간 18시간 이상)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- 나.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이며, 수업이 있는 평일은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, 6교시면 2시간, 4교시면 4시간 인정됩니다. 공·휴일은 8시간 인정됩니다.

2.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(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)

- 가. 나눔포털(<http://www.1365.go.kr>), VMS(<http://www.vms.or.kr>), Dovol(<http://dovol.youth.go.kr>)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나이스와 연계되어 편리합니다.
- 나. 나눔포털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실시하려고 하는 약 한 달 전쯤 미리 인증기관사이트(자원봉사센터, 사회복지협의회,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등)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고 그 기관에서 예약이 성립되면 학교의 개인봉사활동 계획서를 가져가서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결재된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활동 후 확인서를 받아와서 담임선생님께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.
- 다.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봉사자의 성명, 소속, 활동시간, 활동 장소, 활동 내용 및 의견, 확인자의 성명, 전화번호 및 활동 기관의 직인,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라. 봉사활동 실시 2~3일 후 반드시 나눔포털에 접속하여 확인서를 나이스로 전송하는 과정을 꼭 해야 합니다. 하지 않으면, 담임교사의 확인이 불가능합니다.
- 마. 18시간을 채우지 못해 학년말에 봉사활동 지원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 미리 미리 봉사활동을 시행하기 바랍니다.

3. 봉사활동이 인정되는 기관

- 가. 학생개인봉사활동이 대리, 편법 등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되게 하기 위하여 봉사활동 인증기관을 통한 계획 및 실시, 확인 절차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.
- 나.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(단체), 종교적·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(단체),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업체(병원, 아파트, 유치원, 어린이집 등)에서 받아 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(사전에 담임선생님께 계획서 제출 전 문의 드릴 것)
- 다.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은 ① 시·도교육감,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이거나, ②자원봉사센터(안행부), 사회복지협의회(복지부), 청소년활동진흥센터(여가부)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.
- 라. 나이스와 연계된 나눔포털, VMS, DOVOL(청소년자원봉사)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마. 전라북도 봉사활동 전문기관 안내(각 사이트에 자세하게 등록되어 있음)

전북자원 봉사종합센터	주 소	전주시 완산구 선너미 3길 61 4층		
	전화번호	227-1365	팩스번호	227-1364
	홈페이지	http://www.jbvolo.or.kr		
전북청소년 활동진흥센터	주 소	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64 JK 사이언스 2층		
	전화번호	232-0479	팩스번호	287-0479
	홈페이지	http://www.jb0479.or.kr		
전북사회복지 협의회	주 소	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(금암동)		
	전화번호	224-1861,2	팩스번호	224-1863
	홈페이지	http://www.jbcsw.or.kr		
전주시자원봉사 종합센터	주 소	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55		
	전화번호	273-1365	팩스번호	278-7490
	홈페이지	http://nanum.jeonju.go.kr		
청소년자원봉사 DOVOL (e-청소년)	홈페이지	http://www.youth.go.kr		
한국사회복지협의회	홈페이지	http://www.vms.or.kr		
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	홈페이지	http://www.1365.go.kr		

학생 봉사활동 인정사례(변경사항 포함)

-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: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소양교육(1~2시간, 학교에서 실시)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능
-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: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,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불인정
※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소양교육, 회의 참석, 평가단 참여 등은 봉사활동 불인정
- 문화공연 준비 :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
※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 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
- 번역 :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 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
※ 점자,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
- 행사참여 :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(내빈이나 주차), 주변정리,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, 단순참여는 불인정
※ 정부·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
- 물품 및 현금기부 등 :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
예) 현옷 모으기,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, 폐휴대폰 수거, 후원 0회 등
- 학생의 헌혈 자원봉사 시간 인정 : 교육과정 시수와 상관없이 1회 4시간 인정(1년에 인정 횟수 3회 이내, 연 12시간 이내로 인정)
 - 헌혈자 본인만 인정, 헌혈 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
 - 헌혈 전 학부모동의서 또는 헌혈 후 소감록을 작성(동기, 목적 등 기록)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봉사활동 인정
-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: 선플 최대 12시간 인정(초 40자 이상, 중 50자 이상,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)
- 부적절한 봉사활동 운영 사례 :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여 봉사활동,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 가입자 추천 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, 봉사활동을 빙자한 수익사업 운영
-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적 입력 금지 등